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88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 의 자 : 김태선 · 박 정 · 이재관
한민수 · 허 영 · 김영배
김병주 · 박균택 · 박홍배
이병진 · 안호영 · 김주영
이용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서비스는 저출생·맞벌이 시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많은 가구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출산을 앞두거나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육아·가사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로,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삶의 질과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34세 기혼여성 765만 4,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21만 5,000명(15.9%)에 이르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녀 출산과 영유아 양육으로 크게 제약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거주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 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안 제 104조의3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6(가사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하는 금액은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사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4조의36(가사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하는 금액은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u> <u>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u>